

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5일
------	-----	---------

사건번호 및 사건명		
해양사고관련자	성 명	
	주 소	

(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구 사유)

- 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☐ 월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 미만의 사람
- 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☐ 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()

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합니다.

해양사고관련자와의 관계

- ☐ 본인
- ☐ 법정대리인
- ☐ 배우자
- ☐ 직계친족
- ☐ 형제자매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OO해양안전심판원 귀하

첨부서류	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청구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선정 통보
청구인		처리기관 (관할 해양안전심판원)		처리기관 (관할 해양안전심판원)		처리기관 (관할 해양안전심판원)		